

『외화서비스 하나통장』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20년 8월 27일

2. 개정내용 : 해외송금 자동이체서비스 적용범위 명확화,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조문 변경 내용 반영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제1조 (약관의 적용) 외화서비스 하나 통장 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외환거래 기본약관』, 『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』, 『외화수퍼플러스 특약』, 『해외송금 자동이체 거래약관』을 적용합니다.	제1조 (약관의 적용) 외화서비스 하나 통장 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<u>외에 『외환거래 기본약관』, 『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』, 『외화수퍼플러스 특약』, 을 적용합니다.</u>	해외송금자동이체 거래약관 삭제
제2조~제 5조 (생략)	제2조~제 5조 (현행과 동일)	
제6조 (해외송금 자동이체서비스)	제 6조 (해외송금 자동이체서비스) ① <u>이 예금에서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해외송금 자동이체서비스(이하 “이 서비스”라 함)는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송금액 및 약정일자에 따라 본인(예금주)의 지정계좌에서 약정금액을 인출하여 약정일자에 수취인 앞으로 해외송금하는 서비스로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업이 은행의 자동이체처리 절차에 따라 인출됩니다..</u>	1항조문-> 2항으로 순서 변경 1항 서비스 이용에 따른 문구 신설
① <u>해외송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송금사유에 따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거래를 하여야 합니다.</u>	② <u>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송금사유에 따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거래를 하여야 합니다.</u>	1항조문 2항으로 체하 및 문구 변경
② <u>해외송금 자동이체서비스의 1회 송금금액은 USD환산 최저 500불 이상 ~ 최고 5,000불 이하로 지정이 가능하며,</u>	③ <u>이 서비스의 1회 송금금액은 USD환산 최저 500불 이상 ~ 최고 5,000불 이하로 지정할 수</u>	2항 조문 3항으로 체하 문구변경

매월 지정한 날짜(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에 약정한 금액을 해외송금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정한 해외 계좌로 자동 송금합니다.

③ 거래외국환은행 지정거래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이 예금의 지급정지, 송금한도 초과 등 법률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송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중지하며,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송금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.

송금사유	송금한도
증빙서류 미제출 송금	연간 USD 50,000
유학생/해외체 재비 송금	금액제한없음 [다만, 대외지급실적합계(송금액, 휴대반출액, 신용카드등) 가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 통보]
외국인 국내보수 송금	소득증빙서류미제출 시: 연간 USD50,000 (제출시: 연간소득금액 + USD50,000)

있으며, 은행은 매월 지정한 날짜(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에 약정한 금액을 해외송금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정한 해외 계좌로 자동 송금합니다

④ 은행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거래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이 예금의 지급정지, 송금한도 초과, 인출계좌의 지급가능 잔액이 수수료를 포함한 송금액보다 적은 경우 등 법률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,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송금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.

송금사유	송금한도
증빙서류 미제출 송금	연간 USD 50,000
유학생/해외체 재비 송금	금액제한없음 [다만, 대외지급실적합계(송금액, 휴대반출액, 신용카드등) 가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 통보]
외국인 국내보수 송금	소득증빙서류미제출 시: 연간 USD50,000 (제출시: 연간소득금액 + USD50,000)

3항 조문 4항으로 체하 문구변경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적용범위 명확화

	<p>제 7조 (신청 내용의 변경/취소)</p> <p>① <u>이용자는 본인의 사정으로 신청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정일 10일전까지 은행에 변경 또는 해지 신청하여야 합니다.</u></p> <p>② <u>이용자가 송금의 취소를 원할 경우 은행은 외국환관리 관계법령, 규정 및 은행의 업무 절차에 따라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송금 취소 확인서를 받은 후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실제 반환 받은 금액에서 은행 및 환거래은행의 모든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 당일의 대고객 전신환 매입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지급합니다.</u></p> <p>제 8조 (책임)</p> <p>① <u>은행은 이용자가 은행에 등록한 수취인의 이름 및 계좌번호 등 정보의 오류, 수취은행(중계은행 포함)의 귀책사유 등으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송금한 대금이 대외은행으로부터 반환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제6조 제4항에 따라 송금처리가 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③ <u>은행은 천재지변, 정전, 화재, 통신장애, 환거래은행의 지급 지연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송금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합니다. 다만,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</u></p>	<p>제7조 조문 제9조 2항으로 체하 7조 (신청내용의 변경/취소) 신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적용범위 명확화</p> <p>제 8조 조문 제10조로 체하 8조 (책임) 신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적용범위 명확화</p>
--	--	--

<p>제7조 (수수료 우대서비스) <u>이 예금에서 출금하여 해외송금하는 경우 외화송금 수수료(전신료는 제외)를 최고 30%까지 감면합니다.</u></p> <p>제 8조 (환율 우대서비스) 이 예금에서 원화로 출금 또는 이체하거나 원화 입출금통장(타인명의계좌 제외)에서 이 예금으로 이체하는 경우 주요통화 (USD, EUR, JPY)는 최고 40%, 기타통화는 최고 20%까지 환율(Spread)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(기타통화: GBP, CAD,CHF,HKD,SGD,AUD, NZD,THB,NOK,SEK,DKK)</p> <p>제 9조 (약관의 변경)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<u>제13조</u>를 적용(준용)합니다.</p>	<p><u>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.</u></p> <p>제 9조 (수수료) ① <u>이용자가 부담하는 송금수수료, 전신료 기타 이 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관련 제반 비용은 이용자의 인출계좌에서 인출됩니다.</u> ② <u>이 예금에서 출금하여 해외송금 시 송금수수료(전신료는 제외)를 최대 30%까지 감면합니다.</u></p> <p>제 10조 (환율 우대서비스) 이 예금에서 원화로 출금 또는 이체하거나 원화 입출금통장(타인명의계좌 제외)에서 이 예금으로 이체하는 경우 주요통화(USD, EUR, JPY)는 최고 40% 까지, 기타통화는 20%까지 환율(Spread)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(기타통화 : GBP, CAD, CHF, HKD, SGD, AUD, NZD, THB, NOK, SEK, DKK)</p> <p>제 11조 (약관의 변경)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<u>제6조</u>를 적용(준용)합니다.</p>	<p>1항 문구 추가</p> <p>제7조 조문 제9조 2항으 로 체하 문구 변경</p> <p>제 8조 조문 제10조로 체하 내용변경없음</p> <p>제 9조 조문 제 11조로 체하 외화예금거래기 본약관 조문 변 경 내용 반영 제 13조-> 제 6 조로 변경</p>
---	--	---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: 적용